





보 도 참 고 자 료

배 포 일	2020. 2. 24.(월) / (총 7매)							
중앙사고수습본부	담	당	자	이 중 규	전 화	044-202-2730		
관련기관지원반	담	당	자	심은혜 / 이선식	선 확	044-202-2732 / 2745		

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「국민안심병원」운영

- 보건복지부-병원협회 공동 지정, 호흡기질환 전담 외래·입원진료 실시 -
- 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「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」(2.21) 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코로나 감염 불안을 덜고,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'국민안심병원'을 지정한다고 밝혔다.
- □ '국민안심병원'은 호흡기 질환에 대하여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으로써,
 -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, 병원내 감염
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.
- □ 코로나19의 **대규모 병원내 감염**(super-spread)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**초기 호흡기 증상**을 보이는 **환자**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,
 - 국민안심병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·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.
 - 또한,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, 특히 호흡기 환자들의 경우,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고려하였다.











- □ '국민안심병원'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(외래·입원)을 운영한다.
 - 먼저,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**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(호흡기** 전용 외래)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*에서 실시된다.
 - * 감염병 유행시 컨테이너, 천막 등 분리 외래의 경험을 대부분 병원이 보유
 - 둘째,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하여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.
 - 또한, 「코로나19 대응지침」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· 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한다.
 - 또한, 국민안심병원은 **방문객 통제,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**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며,
 -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시 적절한 개인보호구* 착용하는 경우, 확진자를 진료하여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도록 한다.
 - * (개인보호구) KF94이상 마스크, 고글 또는 Face shield, 1회용 앞치마, 리텍스 장갑 착용

국민안심병원 개요













□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(A형), 선별진료소·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(B형)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< 국민안심병원(A,B) 준수 요건 >

① 국민안심병원 A·B 공통 요건

- (환자분류)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증상, 발열, 의사환자 해당여부 등 확인
- **(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)** 모든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 구역을 비호흡기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
- (대상자 조회) 환자진료시 ITS(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), DUR (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)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
- **(감염관리강화)** 손세정제,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,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
- **(면회제한)** 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,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
- **(의료진 방호)**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

② 국민안심병원 B 요건

- **(선별진료소 운영)**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
- (입원실·중환자실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」에 따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격리해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격리
-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되어 운영 되도록 조치
- 「코로나19 대응지침」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·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











- □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**안심병원 감염** 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·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되고(2만 원),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* 등 특례조치가 취해지며,
 - * (일반격리) 38천원~49천원, (음압격리) 126천원~164천원
 -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(건강보험심사평가원)와 병협이 공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.
- □ 국민안심병원은 2월24일(월)부터 **대한병원협회**가 신청을 받고 **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**하며,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, 병원 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.
 - 아울러, 병원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많은
 병원이 동참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.

※ 문의 연락처 : 대한병원협회(코로나19 상황실 02-705-9213~9216)건강보험심사평가원(자원관리부 033-739-4880~4881)

<붙임> 1. 국민안심병원 신청서

2.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











별첨 1

국민안심병원 신청서

		국민안심]병원	참여 신]청시	ने			
٤	요양기관명			요양기관	-기호				
주	·소(상세히)			요양기관	종별				
	설립구분	□국·공립 □의료	.법인 □특		_ 	-지법인 □z	개인 [기타	
운영 현황 ¹⁾	호흡기 환자 분리 운영 병상 ²⁾	병상							
2.0	격리가능 병상	음압격리병상수		병상 일반		격리병상수		均	
·	민안심병원 당유형 (A, B)			국민안심병원 시행가능일		j	년	월	일
		요양	기관 운	-영 현후	황				
위	요양기관은	코로나바이러:	 스감염증	 19 확석	산 방	·지를 위혀	해 보	건복지	부와
대한병	병원협회가 공	동 운영하는 국	-민안심=	병원 사임	겁기관	난 참여를	신청	합니다	7.
		년	월	일	<u> </u>				
			개설	자(대표지	((서명	병 또는	는 인)
건?	강보험심사:	평가원장 귀형	하						
	성 명: 소속부서: 전화번호: 핸드폰 번호: 이메일:					작성일자	-		
	감염관리팀	(담당자)			(연락>	처)			
	성요령		.1 -1 -1 -	-10 2 1	3.8				
1) 운약	꼇여홧 · 국민아	심병원 B 유형을	<u> </u> 시정하는	경우에만	기재				







2) 호흡기 환자 분리운영 병상 : 확보 및 운영 예정 병상 기재 가능





별첨 2 국민안심병원 요건 충족표

◈ 요양기관명 / 요양기관기호 / 담당자 성명, 전화, 핸드폰, 팩스, 이메일 기재 : 좌측 모든 항목에 대한 항목 내 용 시행 가능 일자를 종합하여 1개 날짜를 기재 * 예: '20년 2월 28일(목) •모든 내원 환자에 대해 병원 진입전에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환자분류 등 해당여부를 확인하는지 여부 • 일반 호흡기 환자의 외래진료 구역을 비호흡기 환자 진료구역과 완전히 분리하고 있는지 여부(시설/인력) 월 일(호흡기환자 녆 요일) - 현재 건물 외부 컨테이너, 천막 설치한 경우 또는 기존건물 내 유동인구 외래 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외래진료실 구비 여부(이 중 1개 요건 충족) 진료구역 부터 모든 항목 시행 가능 • 환자 진료시 ITS(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), DUR(의약품안 전사용서비스)를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여부 •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병동을 분리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입위실 •



중환자실

(유형 B)





- 병동을 분리함과 동시에 호흡기 입원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동선을 분

리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



평생친구

	5 5 - 1
	• 원인미상 폐렴환자를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웅지침」에 따라 격리입원 하는지 여부
	• 폐렴으로 입원실·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입원전에 선 제적으로 진담검사 실시 여부
의료진방호	• 폐렴의심환자 진료 의료진의 개인보호구 완비 및 철저한 위생준수 여부 - KF94이상 보건마스크, 고글 또는 Face shield, 1회용 앞치마, 라텍스 장갑 등
	• 평상시 모든 의료진이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진료하는지 여부
면회제한	• 방문객 전면통제 여부 - 단, 환자 보호자만 명부 작성 등 절차를 거쳐 출입 가능
	• 환자 보호자 보호장구(마스크 등) 착용 여부
감염관리 강화	• 손세정제,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 비치 여부 - 출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공간에 비치
	•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감염관리팀, 신속대응팀 구성·운영 여부





